



## 광 주 지 방 법 원

### 제 1 3 민 사 부

#### 판 결

사 건 2014가합54122 부당이득금  
원 고 1. [REDACTED] 조합  
2. [REDACTED] 조합  
피 고 전라남도  
변 론 종 결 2015. 5. 7.  
판 결 선 고 2015. 5. 14.

####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REDACTED] 조합에게 251,137,290원 및 그 중 247,242,490원에 대하여는 2014. 6. 17.부터, 3,894,8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REDACTED] 조합에게 224,402,880원 및 그 중 220,435,280원에 대하여는 2014. 6. 17.부터, 3,967,6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소외 A, B 등의 존재하지 않는 건설기계 등록 및 대출신청

A, B 등은 2009. 7.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제작되지도 않은 건설기계를 서류상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한 뒤 이를 담보로 원고들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한 다음 A이 대표 혹은 공동대표로 있는 건설기계 제작회사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에서 임의로 생성한 차대번호를 이용하여 천공기 및 콘크리트펌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들'이라 한다)를 실제로 제작한 것처럼 건설기계 제작증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별지 제1, 2목록 기재 명의대여자들(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이라 한다)을 모집한 후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와 이 사건 건설기계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건설기계를 취득한 것처럼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한 후 이를 담보로 원고들 등 금융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들의 대출 및 이 사건 건설기계들에 대한 저당권설정

원고 [redacted] 조합(이하 [redacted] 협'이라 한다)은 2009. 7. 29.부터



2011. 3. 4.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명의대여자들을 채무자로 하여 합계 7,475,000,000원을 대출하고, 원고 [REDACTED] 조합(이하 ' [REDACTED] 북 [REDACTED]'이라 한다)은 2009. 12. 10.부터 2011. 5. 30.까지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명의대여자들을 채무자로 하여 합계 7,65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이 사건 건설기계들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현재 원고 [REDACTED] 협의 대출금 잔액은 4,539,686,054원, 원고 북 [REDACTED] [REDACTED]의 대출금 잔액은 5,146,929,054원이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 및 원고들에 대한 과세

1)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은 2009. 7. 29.부터 2011. 3. 4.까지 사이에 나주시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들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이하 '이 사건 취·등록세'라 한다)를 신고하였고, 나주시는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을 납세자로, 이 사건 건설기계들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명의대여자들로부터 합계 227,768,490원[= 취득세 152,312,490원 + 등록(면허)세 75,456,000원], 별지 제2목록 기재 명의대여자들로부터 합계 200,597,280원[= 취득세 124,757,280원 + 등록(면허)세 75,840,000원]을 납부받았다.

2) 원고들은 2009. 7. 29.부터 2011. 3. 4.까지 사이에 [REDACTED] 시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들에 대한 저당권설정 등록(면허)세, 저당권설정 등록에 따른 지방교육세(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 등록세 등'이라 하고, 이 사건 취·등록세, 저당권설정 등록세 등을 통틀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하였고, 나주시는 원고들을 납세자로, 이 사건 건설기계들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원고 [REDACTED] 협으로부터 합계 23,368,800원[= 저당권설정 등록(면허)세 19,474,000원 + 지방교육세 3,894,800원], 원고 북 [REDACTED] 으로부터 합계 23,805,600원[= 저당권설정 등록(면허)세 19,838,000원 + 지방교육세 3,967,600원]을 납부받았다.



## 라. 이 사건 건설기계들에 대한 등록말소

■시는 2013. 1.경 이 사건 건설기계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유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들에 대한 등록을 직권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 및 원고들이 이 사건 건설기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건설기계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과세목적물에 관한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고, 위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건설기계들에 대한 과세를 유효하다고 확정하면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 및 원고들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반면 위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 및 원고들의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당연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대위하거나 자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부당이득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은 가산세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 없이 스스로 자진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들에 대한 취·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원고들의 이 사건 저당권설정 등록세 등 신고행위는 이 사건 건설기계들이 존재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취·등록세에 관한 납세의무는 A, B 등에게 귀속되고, A, B 등은 이 사건 건설기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자신들의 명의를 범죄 목적으로 사용되리라는 것을 모르는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의 예상 가능한 승낙 범위를 넘어 범죄적 방법으로 납세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에게는 이 사건 취·등록세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취·등록세 신고행위는 사기범행을 위하여 마치 건설기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민법 제742조 규정에 의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 이 사건 취·등록세 신고행위는 사기범행의 일부이므로 강행법규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여 민법 제746조 규정에 의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3. 판단

#### 가. 관련 법리

1)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



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취득세, 등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등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등 참조).

2) 한편,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나,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모두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고,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행위와 그에 따른 납부는 과세관청인 피고와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급부관계로서 피고와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 및 원고들 이외의 제3자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위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점, ② 허위의 건설기계 제작증 등을 이용하여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제작되지 아니하여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이전과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건설기계들에 대한 매매계약은 계약 당시부터 사실상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여 위 매매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이 사건 건설기계들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이라는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점,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건설기계들에 대한 취득행위가 없고,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 및 원고들이 과세물건인 이 사건 건설기계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를 오인하여 그 존재를 전제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납부로 인한 불이익을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 및 원고들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관청인 피고에게는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행사하여 재정을 확보할 수 있어 피고의 과세행정의 원



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 다. 납세의무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관청에게 명의 여하와 상관없이 명의자 이외에 실질적으로 소득 등이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라는 취지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건설기계들에 대한 취득행위 자체가 없어 A, B 등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들에 대한 취득행위가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법에서 정한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사건 취·등록세를 납부받았을 뿐 A, B에게는 이 사건 건설기계들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취·등록세의 납부의무 및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취·등록세 납부의무의 귀속주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민법 제742조 적용 여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조세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서는 민법상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비채변제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 마. 민법 제746조 적용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명의 대여자들은 A, B 등의 사기범행과 이 사건 건설기계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명의대여에 따라 이 사건 취·등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취득하는 것처럼 실질과 다른 외관을 창출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취·등록세의 신고행위가 A, B 등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사기범행 과정에서 이루어 졌다는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의 취·등록세 신고납부 자체가 강행법규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바. 소결론

##### 1) 이 사건 취·등록세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취·등록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① 원고 ████████ 협에게 당연무효인 별지 제1목록 기재 명의대여자들의 이 사건 취·등록세 신고행위에 따라 부당이득한 227,768,490원 [= 취득세 152,312,490원 + 등록(면허)세 75,45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북 ████████ 에게 당연무효인 별지 제2목록 기재 명의대여자들의 이 사건 취·등록세 신고행위에 따라 부당이득한 200,597,280원 [= 취득세 124,757,280원 + 등록(면허)세 75,8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2) 이 사건 저당권설정 등록세 등에 관하여

피고는, ① 원고 ■■■■■ 협에게 당연무효인 원고 ■■■■■ 협의 이 사건 저당권 설정 등록세 등 신고행위에 따라 부당이득한 23,368,800원[= 저당권설정 등록(면허)세 19,474,000원 + 지방교육세 3,894,800원] 및 그 중 위 19,474,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17.부터, 위 3,894,8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 취지변경신청서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북■■■■■에게 당연무효인 원고 북■■■■■의 이 사건 저당권설정 등록세 등 신고행위에 따라 부당이득한 23,805,600원[= 저당권설정 등록(면허)세 19,838,000원 + 지방교육세 3,967,600원] 및 그 중 위 19,838,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17.부터, 위 3,967,6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3) 합계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 협에게 251,137,290원 및 그 중 247,242,490원 [= 취득세 152,312,490원 + 등록(면허)세 75,456,000원 + 저당권설정 등록(면허)세 19,474,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7.부터, 위 지방교육세 3,894,8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북■■■■■에게 224,402,880원 및 그 중 220,435,280원[= 취득세 124,757,280원 + 등록(면허)세 75,840,000원 + 저당권설정 등록(면허)세 19,838,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7.부터, 위 지방교육세 3,967,6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06-17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마은혁
	판사	오수빈
	판사	허준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7

별지

### 제1목록

순번	명의 대여자	대출금 잔액(원)	취득세(원)	등록세(원)	저당권설정 등록세(원)	지방교육세 (원)
1	E	92,764,154	5,001,640	2,640,000	600,000	120,000
2	F	82,066,956	3,594,200	552,000	460,000	92,000
3	G	116,790,033	5,048,000	2,640,000	640,000	128,000
4	H	110,193,823	5,022,580	2,640,000	624,000	124,800
5	I	124,183,035	5,009,120	2,640,000	640,000	128,000
6	J	123,640,000	5,037,530	2,640,000	624,000	124,800
7	K	121,892,240	5,015,100	2,640,000	650,000	130,000
8	L	133,653,441	부과자료 없음	부과자료 없음	650,000	130,000
9	M	135,619,153	4,840,000	2,640,000	650,000	130,000
10	N	128,705,156	5,015,100	2,640,000	650,000	130,000
11	O	142,627,673	4,840,000	2,640,000	650,000	130,000
12	P	143,616,571	4,840,000	2,640,000	650,000	130,000
13	Q	128,889,862	4,840,000	2,640,000	650,000	130,000
14	R	147,214,014	5,260,270	2,640,000	650,000	130,000
15	S	136,672,733	4,840,000	2,640,000	624,000	124,800
16	T	35,905,057	4,840,000	2,640,000	624,000	124,800
17	U	162,746,077	4,840,000	2,640,000	624,000	124,800
18	V	163,548,963	4,840,000	2,640,000	624,000	124,800
19	W	156,897,983	4,840,000	2,640,000	624,000	124,800
20	X	150,126,235	4,840,000	2,640,000	624,000	124,800
21	Y	156,873,780	4,840,000	2,640,000	624,000	124,800
22	Z	156,891,531	4,840,000	2,640,000	624,000	124,800
23	AA	170,193,897	4,840,000	2,640,000	624,000	124,800
24	AB	158,387,606	4,840,000	2,640,000	520,000	104,000
25	AC	153,759,308	4,884,000	2,664,000	520,000	104,000
26	AD	123,465,174	4,840,000	2,640,000	520,000	104,000
27	AE	128,273,985	3,300,000	1,800,000	468,000	93,600
28	AF	190,094,679	4,840,000	2,640,000	624,000	124,800
29	AG	158,026,131	4,840,000	2,640,000	520,000	104,000
30	AH	150,183,088	5,264,950	2,640,000	520,000	104,000
31	AI	148,101,434	부과자료 없음	1,800,000	442,000	88,400
32	(주)■■■■■건설	177,760,000	7,480,000	부과자료 없음	520,000	104,000
33	(주)■■■■■건설	129,922,282	5,100,000	부과자료 없음	416,000	83,200
합계		4,539,686,054	152,312,490	75,456,000	19,474,000	3,894,8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06-17

별지

## 제2목록

순번	명의 대여자	대출금 잔액(원)	취득세(원)	등록세(원)	지당권설정 등록세(원)	지방교육 세(원)
1	AJ	129,295,920	4,840,000	2,640,000	624,000	124,800
2	AK	149,490,821	4,840,000	2,640,000	624,000	124,800
3	AL	156,413,305	부과자료 없음	2,640,000	624,000	124,800
4	AM	148,384,110	부과자료 없음	2,640,000	624,000	124,800
5	AN	150,617,875	5,077,280	2,640,000	624,000	124,800
6	AO	129,277,694	4,840,000	2,640,000	624,000	124,800
7	AP	155,933,589	4,840,000	2,640,000	624,000	124,800
8	AQ	135,869,815	4,840,000	2,640,000	624,000	124,800
9	AR	143,569,942	4,840,000	2,640,000	624,000	124,800
10	AS	164,176,447	4,840,000	2,640,000	624,000	124,800
11	AT	162,956,772	부과자료 없음	부과자료 없음	624,000	124,800
12	AU	162,950,766	4,840,000	2,640,000	624,000	124,800
13	AV	162,733,347	4,840,000	2,640,000	624,000	124,800
14	AW	143,257,261	4,840,000	2,640,000	624,000	124,800
15	AX	94,320,303	4,840,000	2,640,000	624,000	124,800
16	AY	149,508,396	4,840,000	2,640,000	624,000	124,800
17	AZ	150,888,815	4,840,000	2,640,000	624,000	124,800
18	BA	150,298,913	4,840,000	2,640,000	624,000	124,800
19	BB	121,354,196	4,840,000	2,640,000	624,000	124,800
20	BC	143,820,228	4,840,000	2,640,000	624,000	124,800
21	BD	108,388,850	3,300,000	1,800,000	468,000	93,600
22	BE	167,590,515	4,840,000	2,640,000	624,000	124,800
23	BF	133,199,474	3,300,000	1,800,000	468,000	93,600
24	BG	184,239,403	4,840,000	2,640,000	624,000	124,800
25	BH	204,233,152	부과자료 없음	부과자료 없음	624,000	124,800
26	BI	188,180,505	4,840,000	2,640,000	624,000	124,800
27	BJ	211,132,826	4,840,000	2,640,000	624,000	124,800
28	BK	154,804,927	3,300,000	1,800,000	468,000	93,600
29	BL	180,710,232	4,840,000	2,640,000	468,000	93,600
30	BM	166,923,009	3,300,000	1,800,000	494,000	98,800
31	BN	217,551,592	4,840,000	2,640,000	624,000	124,800
32	BO	224,328,774	부과자료 없음	2,640,000	624,000	124,800
33	(주) [redacted] 크	100,527,280	부과자료 없음	부과자료 없음	624,000	124,800
합계		5,146,929,054	124,757,280	75,840,000	19,838,000	3,967,600